

# 圖書館의 物品管理

崔 星 洛

(서울教育大學 專任講師)

## 〈目 次〉

- I. 物品管理의 圖書館技術
- II. 物品管理法
  - A. 物品管理法 制定의 背景
  - B. 物品管理法의 目的
  - C. 管理客體
  - D. 管理組織
  - E. 基本制度
  - F. 管理行爲의 節次
- III. 物品管理法의 適用과 問題點
  - A. 圖書館資料의 特殊性
  - B. 圖書館에 있어서의 管理組織
  - C. 資料의 貸出·閱覽과 法上의 使用
  - D. 資料의 交換·寄贈과 廢棄處分

## I. 物品管理의 圖書館技術

物品管理은 一般의 物理的인 管理와 會計的인 管理로 大別할 수 있다. 物理的인 管理란 物品의 物理的 効用과 價値의 維持 및 그 減少를 防止하기 위한 物品의 品質形狀에 適合한 管理를 말하고, 會計的인 管理는 다시 生産經濟에 따른 原價計算의 管理와 消費經濟에 따른 豫算統制의 管理의 두 가지로 區分된다. 前者는 生産과 利潤을 主로 하는 公企業 또는 私企業 등에 있어서 財가 貨幣(G)—商品(W)—貨幣(G')의 形態로 循環하는 過程에서 G'는 物品(商品)이란 過程을 通하여 G보다 큰 價値 즉 利潤을 納게 되므로 이 때의 物品은 製品에 對한 材料로서 企業經濟의 作用에 依한 原價計算의 管理를 하게 된다. 後者는 國家 또는 公共機關 등에 있어서와 같이 利潤을 追求하지 않는 消費的經濟作用 즉 貨幣(G)—商品(W)의 循環에서 끝이므로 利潤追求를 原則으로 할 수 없으며 物品의 단계에서 그 消費의 需要를 充足시켜야 하므로 貨幣가 物品化하여 物品의 形態로서 그 目的을 達成시키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故로 物品은 豫算 즉 貨幣의 本來目的에 따라 統制管理된다.

圖書館은 말 할 것도 없이 後述한 消費經濟의 機關인 만큼 物品의 管理는 豫算統制의 管理와 物理的인 管理의

두 면에서 考慮되어 利用을 위한 技術的인 組織化와 體系化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圖書館界를 살펴보면 오랜 세월을 통하여 모든 圖書館技術이 그 圖書館의 規模와 性格에 따라 研究·檢討되어 組織化되고 簡素化된 것은 사실이나 그 反面 이들 技術의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이고 惰性的으로 行하여 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圖書館技術을 利用을 위한 圖書館技術과 財産으로서의 管理技術의 두 면에서 살펴볼 때 그들의 情熱을 너무 目錄·分類·參考 및 書誌活動 등 利用의 手段, 方法에 치중한 나머지 財産으로서의 管理 즉 會計面과 結合된 管理業務를 他人事務처럼 疎外視하여 온 感이 없지 않다. 더군다나 國家機關이든 民間機關이든 組織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가장 重要한 것이 돈과 사람, 물건의 管理일 때 이것을 疎外하고 될 수 있는 것은 部分的인 職業的 技術밖에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圖書館에서 자란 우리 館員에 의하여 圖書館이 管理運營될 때가 올 것이며 또한 아무리 작은 圖書館일지라도 物品의 管理 特別히 會計上의 管理는 그 根本이 되는 만큼 이에 對한 知識을 目錄·分類 程度는 갖추어야만 하며 그러므로 圖書館學을 마스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전대 圖書館管理 特別히 會計的인 管理面과 圖書館技術과의 調和와 그 發展이란 問題는, 舊物品會計規則 時代에 있어서 全혀 等한 시된 것은 아니지만, 결코 圖書館技術中 이들 管理業務가 體系의 組織化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새로운 物品管理法下에서는 法의 目的, 內容, 構成 등을 研究·檢討하여 圖書館技術과 調和시키지 않는 한 國公立圖書館은 물론 消費經濟的인 면에서 國公立圖書館과 다를 바 없는 私立圖書館은 점점 無力化되고 地位의 向上이나 充實은 到底히 바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館員(司書)은 언젠가 目錄이나 分類技術者의 位置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II. 物品管理法

### A. 物品管理法 制定의 背景

國家의 財政管理作用을 規制하는 法規로서는 憲法을

頂點으로 하여 그 밑에 規制의 對象이 되는 客體의 樣態에 따라 豫算會計法과 國有財産法 그리고 物品管理法 등 主要法律로 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中 豫算會計法과 國有財産法은 政府樹立初期에 制定되어 數次的 改訂을 거듭한 끝에 制度的으로 完備된 水準에 달하였으나 이와 併立하여 存在하여야 할 物品管理上의 準則인 物品會計規則은 1886年 6月 日帝時에 制定된 勅令으로서 이렇다 할 改訂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文化가 發展함에 따라 動産(物品)도 多種多様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급격히 팽창하여진 同時 國家가 國民生活의 廣範圍한 部分에까지 깊이 關係를 이루면서 複雜하고 龐大한 活動을 營爲하게 된 오늘 날의 實情에는 適應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物品會計規則의 結점을 要約하면 ① 管理對象範圍의 不明確, ② 契約管理機能과 物品管理機能의 未分離, ③ 物品의 出納·保管置重, ④ 物品管理機關의 不備, ⑤ 豫算項目과의 關聯性 稀薄 등이며 여기에다 憲法을 비롯한 一連의 財政關係法規와의 不均衡 등 法制的 不備는 責任觀念에 對한 결여를 助成하고 金錢에 比하여 物品을 輕視함에 따라 그 効用성을 忘却하고 物品의 過多調達, 不要不急한 購入, 非効率的인 使用, 保管方法의 不良, 修繕·改良의 怠慢, 不當한 處分 등 不當한 事例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에서 物品의 管理制度를 정비하여 豫算會計法과 國有財産法과 併立한 物品管理制度를 確立하기 위하여 1962年 1月 20日에 物品管理法를 制定하여 法律 第992號로 公布하였고 同年 10月 29日에 閣令 第1015號로 同法施行令을 公布하고 또한 同年 12月 18日에 財務令 第406號로 同法 施行規則을 公布하여 物品管理法의 體系를 갖추었던 것이다.

## B. 物品管理法의 目的

法 第1條에 物品管理法의 目的을 「本法은 國家의 物品의 取得·保管·使用 및 處分에 關하여 基本의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物品의 効率的이며 適正한 管理를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한 바와 같이 本法은, ① 物品의 範圍와 豫算目的에 따른 機能別·性質別·機關別 分類를 明確히 하고, ② 物品의 管理機關을 確立하여, ③ 計劃的인 調達과 運用을 위한 需給計劃과 管理計劃의 制度를 마련하고, ④ 物品管理基準과 方法을 規定함으로써, ⑤ 物品管理機關(職員) 및 使用公務員의 責任을 明確히 하는 등 物品의 管理行爲 즉 取得, 保管, 使用 및 處分에 關한 基本事項을 規定하여 國家의 物品을 効率的이며 適正한 使用과 良好한 管理를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使用」이란 物品의 動的運用의 一面을 「管理」의 象徵으로서 例示的으로 取扱하고 있음은 注目할만 하며 따라서 本法

의 궁극적인 目的이 「眞正한 活用」을 中心으로 規定되어 있으니 만큼 物品의 分類轉換, 管理轉換, 保管의 原則 등 모두가 이에 直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C. 管理客體

### 1. 適用物品(法 第2條)

舊會計規則이 物品의 概念과 範圍에 對하여 극히 不明確한데 比해 本法 第2條에서는 그 概念을 明白히 하고 있다. 즉 國家內에 있는 動産은 그 모두가 使用을 前提로 한다는 觀點에서, 國家의 所有이든 아니든 간에 使用을 위하여 保管되어 있는 動産을 모두 「物品」으로서 法の 適用範圍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物品」을 所有하는 動産의 範圍와 保管하는 動産의 範圍를 區分할 수 있다. 前者는 國家가 所有하는 動産中에서 現金,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銀行의 寄託하여야 할 有價證券, 國有財産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動産 즉 不動産의 從物·船舶·浮標·浮橋·浮船渠와 그 從物, 國營事業 또는 施設에서 그 利用에 使用하는 重要한 機械와 器具 등을 除外한 動産이 이에 속한다. 後者는 國家가 使用하기 위하여 保管하는 動産으로 限定하여 國家가 保管하는 動産中에서 使用을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은 本法에서 規定한 物品으로 取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는 어떠한 事由로써 使用의 目的없이 國家以外의 者의 物品을 保管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物品 즉 郵便物·遺失物·領置物·押收 또는 押留된 動産 등에 對하여는 國家는 所有主의 信賴에 違背되지 않게 着實히 管理하여야 하므로 本法은 이러한 物品에 對하여 本法中 一部의 規定을 準用하는 例外措置를 取하였으며 이를 「準用動産」이라 稱한다. 한편 國家의 所有物이거나 또는 使用을 위하여 國家가 保管하고 있는 動産中에서 그 物品의 性質上 또는 機能上 오히려 本法의 管理規定에 따르게 하는 것이 非効率的인 것이라고 認定되는 것에 對하여는 本法의 一部規定의 効力を 排除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 2. 軍需品の 特例(法 第3條)

軍作戰이나 軍政事務에 使用되는 物品은 그 特殊性과 現實的인 管理體制를 考慮하여 物品管理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며 따로 定한 法律 즉 軍需品管理法에 依하여 管理하도록 되어 있다.

## D. 管理組織

### 1. 物品管理機關의 組織

廣義의 物品管理機關은 總括機關과 管理機關으로 區分되며, 管理機關은 다시 狹義의 管理機關과 執行機關으로 區分된다. 總括機關은 物品管理法上 財務部長官이 되고(法 第15條), 管理機關은 各 中央官署의 長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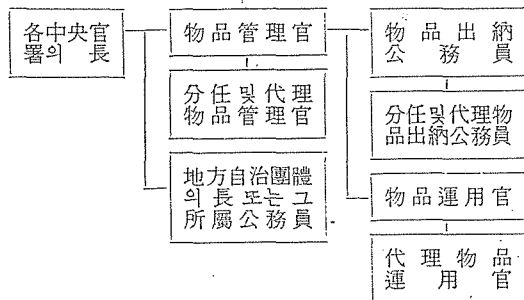
된다. 各 中央官署의 長은 그 所管에 속하는 物品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이라 한다.(法 第10條) 또한 必要에 따라서는 物品管理官의 事務中 一部를 分掌할 公務員 즉 分任物品管理官과 有故時를 對備하여 그 事務의 全部를 代理할 公務員 즉 代理物品管理官을 둘 수 있다.(法 第13條) 委任, 分掌 或은 代理케 하는 境遇에는 個人委任과 官職委任을 둘 수 있겠으나 本法에서는 官職指定에 依한 委任制度를 하도록 되어 있다.

物品管理官은 그가 委任받은 事務中 物品의 出納과 保管에 關한 事務(단 出納命令에 關한 事務 除外)를 그가 所屬한 官署의 公務員에게 義務的으로 委任하여야 하며,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出納公務員이라 하며 物品出納公務員에 對하여도 代理의 制度와 分任의 制度가 認定되어 物品管理官은 官職指定에 依하여 分任 物品出納公務員과 代理物品出納公務員을 設置할 수 있다.(法 第13條) 또한 物品管理官은 必要한 경우에는 物品의 使用에 關한 事務를 그가 所屬한 官署의 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으며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運用官이라 한다. 物品出納公務員과 마찬가지로 代理物品運用官은 둘 수 있으나 分任物品運用官은 둘 수 없는 反面,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物品管理官下에 몇 사람의 物品運用官을 둘 수 있다.(法 第13條)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總括機關

財務部長官

管理機關



2. 機能과 權限

a. 各 中央官署의 長

各 中央官署의 長은 豫算會計法 및 國有財産의 規定에 依하여 그 所官에 있는 歲入歲出豫算의 責任과 國家의 行政財産의 責任을 지도록 規定되어 있는 만큼 本法에서도 그 規制의 對象이 되는 物品에 對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지도록 되어 있다.(法 第9條) 그의 職務로서는: ① 物品管理에 對한 實質的인 面(大體로 所屬公務에 委任된다) ② 制度를 調整하고 物品을 管

理하는 公務員에 對한 指揮監督, 協議承認, 檢査等 總括하는 面(固有의 權限으로서 行되나 內部的으로 委任하는 것은 무방).

b. 物品管理官 (法 第10條)

物品管理官은 物品에 對한 執行者로서 그 機能은 物品의 取得, 保管, 使用, 處分, 所屬分類의 決定, 分類轉換, 不用의 決定 등 一連의 物品의 管理事務를 統括하게 된다. 단 物品의 出納과 保管에 關한 事務(出納命令에 關한 事務 除外)는 義務的으로 物品出納公務員에게 委任되어야 하고 拂出된 物品의 使用에 關한 事務는 物品運用官에게 委任할 수 있으므로 決코 物品管理官은 命令作用에 依한 物品管理를 行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c. 物品出納公務員 (法 第11條)

위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物品管理官은 그 所管의 物品管理에 關한 事務를 行하는 만큼 命令作用과 執行作用을 함께 行하게 되나 內部牽制上 金錢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物品管理에 있어서도 命令作用과 執行作用을 分離하도록 하여 그의 所管事務의 執行事務 즉 物品의 出納과 保管에 關한 事務(出納命令에 關한 事務 除外)를 物品出納公務員에게 委任하여야 하고, 委任을 받은 物品出納公務員은 物品管理官의 出納命令에 依하여 物品을 出納하는 만큼 物品運用官에 拂出된 物品에 對하여는 하등의 責任이 없다. 그러므로 物品出納公務員의 機能과 職責은 自己의 保管下에 있는 物品의 出納·保管에 한하게 된다.

d. 物品運用官(法 第12條)

物品運用官은 物品管理官의 所官事務中 物品의 使用에 關한 事務를 物品管理官으로부터 委任받아 行하게 된다. 따라서 物品運用官은 物品出納公務員으로부터 交付받은 物品을 所屬公務員들에게 國家의 事務 또는 事業의 目的과 用途에 따라 使用케 하거나 이미 使用中인 物品에 對한 管理事務를 行하게 된다. 그리고 物品의 效用을 흡수한다는 物品本來의 目的은 이 過程에서 實現되는 만큼 管理過程中 가장 重要한 過程이다.

3. 物品管理公務員의 義務

物品管理公務員도 公務員인 이상 國家公務員法上的 規制를 받는 것은 물론 財産管理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의 特別한 職務規準에 복종해야 한다. 法 第20條에서 ①「物品管理에 關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管理義務로 (1) 本法 其他 物品管理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遵守할 것, (2)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서 事務에 종사할 것 등 職務遂行에 要求되는 注意義務 基準을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違反하였을 때에는 職務上의 義務違反으로 懲戒處分의 對象이 된다. 다음 法 第21條에서는 ②「物品에 關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

務員」의 行爲制限을 規定하고 이에 違反한 行爲에 對하여는 單純한 違法性 및 不當性의 非難은 물론 法律上 絶對無効임을 規定하고 있다.

라. 物品管理公務員의 責任

法 第39條에서는 ③「物品管理公務員」의 辨償責任을 規定하고 그 成立要件으로서 : (1) 物品管理公務員이 物品管理關係法令 등의 規定에 違背한 物品管理行爲를 하였거나 (2) 物品管理關係法令 등의 規定에 따른 物品管理行爲를 하지 아니한데 對하여 (3)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거나 (但 物品出納公務員을 除外한 경우) (4)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怠慢히 하여 (物品出納公務員의 경우) (5) 그 保管에 屬하는 物品을 亡失하거나 毀損하였을 때 (但 物品出納公務員의 경우)와 (6) 國家에 損害를 끼쳤을 때 (但 物品出納公務員을 除外한 경우)로 하고 있다. 辨償責任의 「有無와 辨償金額은 最終的으로 監査院이 判定하며 辨償額은 亡失의 경우에는 物品의 價格이고 毀損의 경우에는 物品의 減價額이 된다. 여기에서 注目할 點은 物品出納公務員의 辨償責任에 對한 成立要件을 善管者의 注意怠慢에 두었을 뿐 아니라 舉證責任까지 課하여 다른 物品管理官에 比하여 高度의 注意義務와 강한 辨償責任을 課하고 있다는 點이다.

5. 物品使用公務員의 責任

物品使用公務員은 獨立된 物品管理機關으로서 辨償責任은 지지 아니하나 當該 身分으로서 行한 行爲가 一定한 要件을 充足시켰을 경우에는 物品管理公務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獨立하여 辨償하여야 하며 그 辨償責任의 成立要件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使用中인 物品을 亡失 또는 毀損하였을 때」(法 第40條)라고 한바 이에 對하여는 上述하였으므로 생략한다.

Ⅱ. 基本制度

1. 物品의 分類

a. 分類와 細分類

物品을 分類한다는 것은 物品에 對하여 어떤 目的을 賦與하는 行爲이며, 法 第5條에서는 物品을 分類하는데 있어 劃一的인 基準을 提示하여 物品을 使用 또는 處分의 目的에 따라 機能別(事務用·事業用 등 用途에 따른 區分), 性質別(備品·消耗品), 機關別(官署의 區分)로 分類하도록 하고, 이 分類는 中央官署의 豫算의 定한 物品關係經費의 目的에 違背되지 아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는 物品의 使用 또는 處分의 目的과 調達된 豫算의 目的과의 關聯을 明白히 하기 위한 것이며 大體的으로 項의 단계에서 捕捉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數個의 項을 合하여 하나의 分類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財務長官과 協議하여 經費의 目的에

依하지 아니한 分類를 設定할 수 있으며 다시 物品管理上 必要에 따라 細分類를 할 수 있다. 分類는 中央官署의 長이 하되 財務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b. 所屬分類의 決定 (法 第7條)

分類 및 細分類의 體系가 設定되면 個個의 物品을 어떤 分類와 또 細分類에 所屬시켜야 하며 이는 物品管理官이 法 第5條 및 法 第6條의 취지에 따라 決定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決定한 후에는 品名과 數量을 物品出納公務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2. 分類轉換과 管理轉換

a. 分類轉換

豫算이 單年度性和 物品의 繼續性 즉 物品이 當該年度에 限定되지 않고 獨自의인 存在로써 繼續的으로 그 用途를 發揮하므로 이 兩者의 相異點을 調節할 手段으로서 法 第8條에 分類轉換을 規定하고 있다. 이는 物品의 效率의인 使用과 處分을 위하여 이미 어떤 目的이 賦與되어 있는 分類로부터 他分類에 이를 轉換시켜 다른 目的을 賦與하는 積極的인 管理行爲이며, 이 分類轉換은 物品管理官이 하되 中央官署의 長의 承認 또는 財務長官의 協議를 얻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法 第8條의 規定에 의거 令 第7條에 列擧된 物品에 있어서는 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 要하지 않는다.

b. 管理轉換

管理轉換이라 함은 어떤 特定한 物品管理官下에 있는 物品을 物品의 運用狀況의 推移에 따라 다른 物品管理官의 所屬으로 移轉하여 使用케 하므로써 物品의 效用性을 높이고져 하는 制度로 法 第19條에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管理轉換은 物品効用의 配分이란 뜻에서 두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 永久的인 管理轉換 즉 返還을 條件으로 하지 않는 경우, 둘째 返還을 條件으로 한 즉 時限的인 相互貸借 등이다. 따라서 이를 無制限하게 許用하던 豫算의 秩序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制約하기 위하여 本法에서는 物品管理官이 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없이 管理轉換을 專行할 수 있는 경우와 財務部長官의 協議없이 中央官署의 長이 承認을 專行할 수 있는 경우와 財務部長官의 協議를 얻어야 하는 경우를 規定하고 있다. (法 第19條 : 令 第20, 21, 22條)

3. 帳簿制度

物品管理官은 物品管理簿를, 物品出納公務員은 物品出納簿를, 그리고 物品運用官은 物品運用簿를 各各 備置하여 各者의 職務에 따라 記錄하도록 規定하고(法 第36條) 帳簿의 書式과 記入方法은 財務部長官이 定하도록 規定하였으며(令 第42條) 이에 의거 財務部長官은 具體的인 事項을 規則 第42條에 規定하였다. 그러나 規則 第42條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中央官署의 長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別度の 書式이나 記錄方法을 定할 수 있다.(規則 第50條)

#### 4. 檢 查

中央官署의 長은 그가 管理하는 物品에 對하여 物品 管理公務員의 管理行爲가 法의 規定을 준수하고 있는 가의 與否를 檢査하기 위하여 每會計年度 一回의 定期 檢査와 物品管理官 또는 物品出納公務員, 物品運用官이 交替된 경우에는 隨時檢査를 行하게 하였고, 物品管理官의 경우에는 中央官署의 長이 任命한 檢査公務員이, 物品運用官 또는 物品出納公務員의 경우에는 物品管理官 또는 物品管理官이 命한 公務員이 檢査公務員이 되게끔 하였다. 이에 反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必要에 依하여 行하는 隨時檢査에 對하여는 中央官署의 長이 命하는 檢査公務員이 檢査를 行하도록 하였다.

### F. 管理行爲의 節次

#### 1. 物品의 取得

取得이란 物品을 國家의 財産으로서 受入하는 것으로 所有權의 取得은 물론 占有權의 取得도 包含된다. 그 具體的인 機能으로는 買入·借受·生産·編入·副生·受贈 등을 들 수 있다. 取得의 意思決定은 物品管理官이 하여 契約擔當公務員에게 必要한 措置를 請求하여야 하며 請求를 받은 契約擔當公務員은 取得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取할 義務가 賦課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結果를 取得을 請求한 物品管理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規則 第22條, 第26條) 取得한 物品은 반드시 中央官署의 長 또는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指命하는 關係公務員이나 技術者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 2. 物品의 使用과 返納

使用이라 함은 物品을 그 用途에 따라 國家에서 使用하는 것을 말하며, 物品管理過程中 가장 動的인 部分이며 處分을 目的으로 取得한 物品을 除外하고는 모든 物品이 이 단계에서 그 本來의 目的을 달성하게 된다. 使用은 分類目的에 따라 運用計劃에 依하여 使用되어야 한다. 使用의 節次는 物品運用官이 設置된 경우와 設置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前者에 있어서는 物品運用官이 物品管理官에게 使用을 위한 出納命令을 請求하여 이에 依하여 物品管理官은 物品出納公務員에게 拂出命令을 發하여 物品管理官의 命令에 依하여 物品出納公務員이 拂出한 物品을 스스로 保有하면서 物品使用公務員에게 使用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物品運用官의 請求에 依하지 않고 自己의 權限에서 拂出命令을 發할 수 있다. 이 때에는 使用의 目的을 明確히 하여 物品運用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後者に 있어서는 物品管理官이 物品運用官의 事務를 行하나 現實의 物品은 物品出納公務員에게 保管하고 使用의

必要性을 判斷하여 物品出納公務員에게 拂出을 命하여 物品使用公務員에게 使用케 한다. 使用中인 物品이 使用할 必要가 없거나 修繕 또는 改造를 要할 때에는 그 事實을 物品管理官에 報告하여, 그 命令에 依하여 返納하여야 한다.(法 第23, 24條)

#### 3. 物品의 保管과 出納

物品은 原則的으로는 國家의 施設에 언제나 使用 또는 處分할 수 있도록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서 保管하여야 한다.(法 第25條) 단 物品管理官이 國家의 施設에 保管하는 것이 物品의 使用 또는 處分을 함에 不適當하다고 認定하거나 기타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國家以外의 者의 施設에 保管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出納에 關한 命令은 物品管理官이 物品을 出納하게 하고자 할 때 物品出納公務員에게 對하여 行하는 것으로(法 第26條) 物品管理官 自身이 物品을 出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物品出納公務員은 出納命令없이도 物品을 出納할 수 없으므로 相互牽制의 構造가 確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4. 物品의 處分

物品管理法上 「處分」의 機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法 第5條 「分類」의 「物品의 適正한 使用과 處分」에서의 處分 즉 目的的인 處分이고 다른 하나는 本條에서의 無目的的인 處分이다. 前者는 國家의 事務 또는 事實의 目的에 따른 用途에 따라 行하는 處分이며, 後者는 使用中인 物品이 使用 不可能하게 되거나 使用할 必要가 없게 되어 不用의 決定을 하여 處分하는 경우이다.

##### a. 不用의 決定과 廢棄·賣却

不用의 決定은 物品自體가 老朽, 變質 또는 其他事由로 因하여 使用 또는 處分할 수 없게 되었거나(絶對的 不用), 使用 또는 處분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지만 使用 또는 處분할 必要가 없게 된 物品으로서 管理轉換 또는 分類轉換 등 方法에 依하여도 處分할 수 없는 경우(相對的 不用)에 行하여 지며 處分의 前提가 되는 行爲인 것이다.

不用의 決定을 한 物品은 가능한 한 이것을 賣却하여 收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賣却하는 것이 國家에 不利하거나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廢棄할 수 있다.(法 第30條) 不用의 決定이나 廢棄處分은 原則으로 中央官署의 長이 行하는 것이나 令 第35條에 規定한 物品外의 物品에 對하여는 物品管理官이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中央官署의 長이 미리 定한 基準에 따라야 한다.(令 第37條)

賣却할 수 있는 物品은 賣却을 目的으로 한 것이나 不用의 決定을 한 物品에 한하며(法 第31條), 賣却의

意思決定은 物品管理官이 行하여 契約擔當公務員에게 賣却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請求하여야 하고 契約擔當公務員은 그 請求에 의거하여 賣却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法 第31條)

#### b. 物品의 貸付

貸付를 目的으로 하는 物品은 물론 貸付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國家의 事務 또는 事業에 지장이 없다고 認定되는 物品에 한해서는 國家以外的 者에게 貸付할 수 있다. (法 第32條) 貸付에 關한 節次는 賣却의 경우와 같다.

### III. 物品管理法의 適用과 問題點

#### A. 圖書館資料의 特殊性

圖書館資料도 物品인 만큼 圖書館資料管理에 關한 獨立된 法律을 規定하지 않는 한 本法의 適用을 받아야 하며, 本法의 궁극적인 目的이 物品의 效率적이고 適正한 活用に 있음은 圖書館資料의 本來의 使命인 適時에, 適格한 사람에게, 適格한 資料를 效果의 利用 시킨다는 點과 一致하나 實際問題에 있어서는 本法를 忠實히 適用하면 할수록 圖書館學의 本來의 目的을 阻해함은; 手續의 번잡이라든가 一般物品과 다른 圖書館資料의 強한 個性과 特殊性 및 公共성을 考慮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資料의 選擇, 購入에서 貸出에 이르기까지의 一連의 動的 手續作業이 一般物品에 比하여 高度의 技術성을 要한다는 것을 配慮하지 않은에서 오는 毛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圖書館活動이 活潑하면 할수록 一般物品과는 달리 靜의 狀態를 벗어난다는 데 그 原因이 있을 것이다.

#### 1. 個性과 數의 概念의 相異

圖書館資料를 效用面에서 볼 때 그 價値는 物理的 形態보다 內容 즉 資料의 價値에 있는 만큼 그 自體의 物理的 形態가 完全하고 耐用성이 있다 하더라도 資料의 價値가 減衰하던 保存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物品과 다른 物品으로서의 特殊性도 이 資料의 價値에서 찾아야 함은 물론 圖書館資料의 備品 또는 消耗品으로서의 適格性도 이에 따라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資料의 價値란 知識의 分野에 따른 그 內容을 意味하며, 이 知識의 分野는 多種多様하게 分化되므로 資料 하나 하나에 따라서도 다른 個性을 附與하게 된다. 그리고 그 自體는 「資料」 또는 「圖書」라는 品名에 속하면서 資料의 價値의 分野가 各各 다를 뿐 아니라 其外의 品質形狀(書誌的事項)이 資料의 個體에 따라 다르므로 다시 二重의 個性을 가지게 됨에 따라 「物品으로서의 個性이 극히 강하여 數量的인 取扱을 할 수

없는 物品」에 속하게 된다. 그 反面 一般物品인 「책상」「의자」등은 各己 獨自의 效果를 가진 別個의 品名으로, 同種品目안에서는 그 數量으로서 取扱할 수 있으며 圖書館資料와는 反對로 「物品으로서 個性이 稀薄하여 數量的인 取扱이 되는 物品」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兩者間의 數의 概念上의 相異點은 物品管理에 있어서 異質성을 초래한다.

#### 2. 資料의 効用과 保管

一般物品이 物品出納公務員에 受入되어 마지막 使用者의 使用에 이르기까지의 管理過程은 극히 靜의인데 比하여 圖書館資料는 資料의 個性과 高度化한 專門性에 依하여 受入의 단계에서부터 物品出納公務員의 靜의 保管狀態에서 벗어나 貸出에 이르기까지의 一連의 手續作業이 극히 流動的인 過程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整理作業이 끝나 書庫나 閱覽室의 書架에 配架된 단계는 一般物品出納公務員의 단계에서 倉庫에 保管된 靜의 狀態와는 달리 「使用을 위한 保管」 단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 날과 같이 開架制를 實施하는 경우에는 一般物品이 倉庫에 保管된 것과는 달리 「使用의 단계」에 돌입하므로써 物品管理法上의 保管은 圖書館에서는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圖書館資料가 一般物品과는 달리 資料의 効用 즉 資料의 價値의 最大限의 提供을 바탕으로 하여 管理運用되는 組織性和 高度의 運用性에서 오는 特性이라고 볼 수 있다.

#### B. 圖書館에 있어서의 管理組織

物品管理法上에 있어서의 管理組織은 앞서 論한 바와 같거나와 圖書館에 있어서의 이를 어떻게 運用하느냐 하는 問題는 各 圖書館의 規模에 따라 相異하므로 一律의 規定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나 管理組織이란 圖書館뿐 아니라 어떤 機關에 있어서든 物品을 效果의 爲로 運用하는 中樞가 되므로 깊이 研究하여야 하며, 더군다나 圖書館에 있어서는 資料 그 自體가 一般行政機關에서와 같이 事務 또는 事業의 補助의 爲로 物品으로서 効用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고 資料의 効用 그 自體를 中心으로 모든 圖書館의 事務가 組織運營되는 만큼 物品管理機關의 組織은 圖書館의 活動에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

#### 1. 管理機關의 一元化와 館長의 位置

豫算上 같은 機關에서, 여러 가지 名目的 經費로 各課(局)에서 圖書資料(넓은 意味에 圖書館資料)를 購入하므로써 資料의 重複購入은 물론 그 管理에 있어서도 많은 混雜과 浪費를 惹起시키며 이는 物品管理法의 本來의 目的인 適正하고 效率의 使用과 良好한 保管에 異背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名目的 經費로써 圖書館資

料를 購入하든지 간에 圖書館資料에 속하는 資料로서 그 名稱을 띤 것은 一切 圖書館에서 購入, 整理하여 貸出의 形式으로 各課(局)에 利用될 수 있는 一元化된 運用이 要望될 뿐 아니라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圖書館資料에 對한 管理官이 統一되어야 하며, 管理官은 一般物品을 管理하는 物品管理官이 아니라 圖書館을 專擔함으로써 圖書館資料 管理業務에 精通하고 또한 圖書館運營을 効果적으로 遂行할 수 있는 「圖書館長」 職에 있는 者를 管理官으로 任命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本法에서 物品의 取得을 위한 措置請求에서 保管, 使用處분에 이르기까지의 全面的인 管理事務가 管理官의 權限에 속할 뿐 아니라, 前述한 바와 같이 圖書館에 있어서의 資料는 一般行政機關에 있어서의 物品과는 달리 資料 그 自體가 主體의 要素이므로 그 取得·使用·保管·處分은 圖書館 本來의 業務인 것을 미루어 볼 때, 圖書館長이 圖書館資料에 對한 專任管理官으로서 任命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問題는 圖書館長의 權限은 물론 圖書館의 目的達成을 크게 左右한다.

物品出納公務員·物品運用官 등 其他 管理機關은 管理官의 委任事項이므로 圖書館長이 管理官으로 任命됨으로써 解決된다.

### C. 資料의 貸出·閱覽과 法上의 使用

圖書館에 있어서 資料의 貸出·閱覽은 物品管理法의 使用(法 第32條)에 該當하며 處分을 目的으로 取得된 物品을 除外한 모든 物品의 効用은 이 단계서 發揮되고, 「取得·保管·計劃制度」등 모든 規定은 이 「使用」을 適正 및 効率화시키기 위한 擔保措置로 存在한다 함은 圖書館에 있어서의 貸出·閱覽이 直接奉仕部門으로서 모든 資料의 効用이 이 단계에서 發揮되고 따라서 모든 圖書館業務가 여기에 歸結됨과 相互共通되나 問題는 이러한 目的의 相互一致에 있는 것이 아니고 「使用」에 대한 概念과 對象이 兩者間에 큰 差異가 있다는 點이다. 法上의 「使用」은 「物品을 그 用途에 따라 國家에서 使用」하는 것으로 限定하므로써 物品運用官은 실질적으로 그 所屬公務員에게만 使用시킬 수 있는데 比하여 圖書館에서는 對象자가 누구이든 閱覽·貸出し킨다는 것이 「使用」에 對한 一般的인 通念인 것이다. 따라서 圖書館에 있어서의 「使用」즉 閱覽·貸出은 本法의 다른 規定을 適用할 수 밖에 없다.

物品管理法上 圖書館의 資料貸出은 첫째 貸出할 資料의 分類所屬(備品·消耗品), 둘째 貸出者의 所屬 등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備品取扱되는 圖書類의 貸出에 對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圖書類의 貸出은 法上 貸出받을 對象에 따라 貸付·使用·管理轉換에 該當되는 경우가 있다.

#### ① 民間團體 및 個人에 對한 貸出

이 때에는 物品管理法 第32條「貸付」에 該當되며 貸付의 決定權은 物品管理官에 있으므로 物品運用官 單獨으로는 行할 수 없으며 一斷 物品管理官에게 返納하고, 物品管理官은 契約擔當公務員에게 貸付를 위한 必要한 措置를 請求하여 契約을 締結한 후 貸付 즉 貸出을 하게 된다.

#### ② 國家機關과 그 소속 職員에 對한 貸出

이 때에는 다시 他官署의 職員에 貸出하는 경우와 自體官署에 속한 職員에 貸出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區分된다. 前者의 경우에는 本法 第19條 第1項 但書에 依한 令 第21條 第1號의 返還條件附 管理轉換에 該當되며 物品管理官의 命令에 依해서 만이 行하게 된다. (相互貸借 包含) 後者の 경우에는 本法 第23條「使用」에 該當하며 이 또한 物品管理官의 命令에 依하여야 한다.

위의 어떤 경우는 간에, 그 手續과 節次는 극히 번잡하여 어떤 便法을 使用하지 않고는 本法의 適用이 不可能하며 이러한 모순은 本法이 一般物品을 對象으로 하며 圖書館資料의 特殊性和 公共성을 考慮하지 않았다는데 起因한다.

### D. 資料의 交換·寄贈과 廢棄處分

圖書館은 發展하는 社會와 資料의 國際性에 對하기 위하여 必然적으로 資料의 交換·寄贈이 따르며, 資料의 交換·寄贈을 通하여 國際間의 文化·技術의 相互交流는 물론 相互間의 理解를 增進시키며, 資料를 有無相通하며 交換하므로써 市中에서는 購入할 수 없는 學術資料와 政府刊行物을 蒐集하고, 적은 經費로서 他國의 資料를 蒐集하는 資料蒐集의 絶對的인 手段인 만큼 오늘 날의 많은 圖書館은 自國內에는 물론 他國의 學術·研究機關 및 圖書館과 協定이란 通路를 通하여 交換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物品管理法에서는 이러한 交換이나 寄贈에 對하여는 아무런 規定이 없을 뿐 아니라 豫算會計法 第8條에서도 「法律에 依한 根據」를 規定하고 있으므로 本物品管理法과는 關係없는 다른 法律로서 이에 關한 것을 規制하여야 하며 法律 第1,424號 圖書館法 第17條(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第3項에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를 規定하고 있으나 이는 他圖書館에는 該當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不得已 國家機關일 때에는 物品管理法 第19條에 依한 管理轉換이나 法 第30條에 依한 廢棄處分을 하여 寄贈形式으로 交換하고, 民間機關일 때에는 法 第30條에 依한 不用圖書(資料)로서 廢棄處分하며 寄贈形式으로 交換하는 方法 外 別方法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實際問題에 있어서는 어려운 點이 많으며 다음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① 廢棄處分に 依한 交換·寄贈일 경우에는 우선 不用의 決定(相對的)이 先行되어야 하며, 不用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 일일이 中央官署의 長의 承認을 得할 수 없으므로 法 第3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해 物品管理官이 不用의 決定을 할 수 있는 物品으로 指定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令 第37條에 規定된 所屬中央官署의 長이 定하는 不用 및 廢棄處分基準에 資料를 一括의 으로 包含시켜 物品管理官의 權限으로 廢棄處分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管理轉換에 依한 資料의 交換·寄贈의 경우에 있어서도 上述한 바와 같이 일일이 財務部長官의 協議를 얻을 수 없으므로 法 第19條 第1項의 但書「閣令으로

定한 物品」에 의거 令 第21條 第4號의 「財務部長官과 協議를 要하지 않는 物品」으로 指定받아야 한다.

以上에서 物品管理法의 簡略한 解說과 이의 適用에 따라 일어나는 많은 問題中 몇 가지를 考察하였다. 그러나 本法이 上述한 圖書館의 社會性과 資料의 特殊性 및 公共性을 配慮하지 않은 나머지 二重의인 構造를 招來케 하고 圖書館本來의 目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物品管理法을 改訂하거나 獨立된 法律이 制定되기를 바라며 不然이면 하루 속히 各 部署別로 圖書館 資料管理에 關하여 閣令으로 別度 制定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그 實例로서는 調達廳의 圖書館管理規定을 들 수 있다.

## 學校圖書館圖書運用論

〈附〉 學校圖書館의 버어티컬 파일

金 斗 弘 著

圖書配架, 圖書紹介, 閱覽奉仕, 參考業務 및 學習活動과 圖書館資料와의 連結 等に 關聯된 學校圖書館奉仕의 諸部面을 教育學的인 基礎 위 에 서 論述하고 있다.

學校圖書館 버어티컬 파일의 整理 및 利用이 附錄되어 있다(pp.81—118)

菊版/中質紙/118面/320원

注文處：圖協事務局內

## 도협 일보 원고 모집

本報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 음과 같은 內容의 論文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消息, 其他 消息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
4. 其他 本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것

(磨勘은 每月 15日 限)

編 輯 室